

안산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(안)

의안 번호	29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'94. 9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□ 제정이유

-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코자함.

□ 주요골자

- 위원회의 기능 : 부동산 중개업자와 의뢰인 또는 부동산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신청에의해 심사 조정 (안 제2조)
- 위원회의 구성 : 위원장은 시장이되고 시장포함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. (안 제3조)

□ 참고사항

- 근거법령 :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 3 제7항
 - 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. 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.
- 예산사항 : 추경예산 확보 750 천원
(30,000원 * 5명 * 5회)

안산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(안)

제 1 조 (목적) 이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 (이하 "법"이라한다) 제3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안산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기능)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또는 중개업자와 제 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한다.

제 3 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

③ 위원은 법제37조의 3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제 4 조 (위원의 임기)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퇴직 또는 전보된 때까지로 한다 .

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유고시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 5 조 (위원장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6 조 (회의) ① 위원회는 년 1 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8 조 (간사 및 서기)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주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토지관리계장으로 한다.

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 발언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 9 조 (조사)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중개업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 10 조 (수당등)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중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내에서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 11 조 (시행세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